

#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지원

## 1 기본 현황

### 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								
사업위치	자치구 환경미화원 휴게실 490개소										
총사업비	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국비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시비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보조율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구비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,000천원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,000천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 %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총	(국비)	(시비)	(보조율)	(구비)	200,000천원		200,000천원	0 %	
총	(국비)	(시비)	(보조율)	(구비)							
200,000천원		200,000천원	0 %								
사업내용	○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지원										
사업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수행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자치단체 보조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이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출연출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위탁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							
사업시행주체	자치구										

### 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
신규	계속	투자심사	학술용역	기술심사	자방보조심의	정보화심사	공유재산	안전예산	출자·출연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경상	투자				'16.10월	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

### □ 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

지원형태	법령근거	보조금심의회 결과
사업보조	폐기물관리법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,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(보건조치) 및 제29조(도급 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)	적정
운영비보조	해당없음	

### 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기후환경본부	생활환경과	구분상 2133-3720	장만수 2133-3729	김승환 2133-3734

## 2 예산 설명

### 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5년 예산액	2016예산액 (A)	2017예산(B)	증감 (B-A)	(B-A)*100/A
					(x-)
계	(x-) 200,000	(x-) 200,000	(x-) 200,000	(x-)	(x-)
자치단체자본보 조	(x-) 200,000	(x-) 200,000	(x-) 200,000	(x-)	(x-)

### 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과목구분	세부 산출내역
자치단체자본보조	○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비 지원 200,000,000원 = 200,000천원

## 3 사업 설명

### □ 사업목적

-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후 옷을 갈아입고 씻을 수 있는 시설 및 충분한 휴식 공간 제공으로 환경미화원 사기 진작 및 후생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### □ 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 - 폐기물관리법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  -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(보건조치) 및 제29조(도급 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)
-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  - 청소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 및 가이드라인 시행계획(시장방침 제92호, 노동정책과)

### □ 사업내용

- 지원대상 : 자치구 환경미화원 휴게실 490개소
- 사업기간 : 2017. 1. 1 ~ 12. 31
- 사업내용

- 자치구 직영·대행 환경미화원 휴게실 중 협소 열악한 시설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통해 환경미화원들에게 충분히 휴식하고 씻을 수 있는 시설 제공
- 25개 자치구 직영·대행 환경미화원 휴게실 중 열악한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지원·개선
  - ▷ 샤워시설, 화장실 등 시설 개선, 노후 컨테이너 교체
- 총사업비 : 200,000천원

**추진경위**

- '14. 4 : 「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시행계획」 (시장방침 제92호)
- '14. 6 ~ '15. 6 : 적환장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방안 학술용역 추진

**사업추진절차**

- 집행절차 : 기본계획 수립(시) → 자치구별 소요예산 파악 → 지원계획 수립 → 자치구에 사업비 지원

**2017년도 추진일정**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200,000	
기본계획 수립	2017.01~2017.01	0	지원방향 설정
지원계획 수립	2017.02~2017.02	0	자치구별 소요예산 파악 및 지원방침 결정
사업비 지원 및 사업시행	2017.03~2017.03	200,000	사업비 교부 및 자치구별 사업 추진

**4 사업효과**

**최근 3년 추진실적**

2014년도	○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지원(250,000천원)
2015년도	○ 적환장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방안 학술용역 완료 ○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비 지원(200,000천원)
2016년도	○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비 지원(200,000천원)

□ 향후 기대효과

- 환경미화원들에게 작업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등 후생복지 향상으로 환경미화원 사기 진작

**5**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당초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5	(x-) 200,000	(x-) 0	(x-) 0	(x-) 200,000	(x-) 198,600	(x-) 0	(x-) 1,400